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7.5.24.(수) 16:00 - 18:00	장 소	협업카페(구청 11층)
참석자	9명(김경옥, 김지희, 손민호, 엄혜진, 유의선, 윤성봉, 윤정섭, 이진수, 이철)		
회 의 내 용			
<p>○ 회의시작(성원부족으로 간담회로 진행)</p> <p>○ ○○○ : 이강훈 위원이 성북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사임하였다. 따라서 인권위 정원이 19명이 되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성원 부족으로 보고사항으로 진행된다. 인권위 3월 회의가 간담회로 진행되었고 4월 회의가 미 개최됨에 따라 그 기간에 들어 온 조례에 대해서는 일정상 보고만 가능하다.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서를 해당부서에 보낸 상태이다. 유사한 조례 검색 결과 광명시에 『아이와 맘편한 도시만들기 운영 조례』가 있다.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서 3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조례에 양성평등의 개념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의 구체적 정의가 없다. 세번째로 용어가 너무 혼동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서의견은 양성평등은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이 없었고,(조례를 만들때 성별, 부패, 인권,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다) 정의에 대해서는 초안에는 정의가 있었으나 법적 심사 하는 곳에서 생략을 요청했다고 한다.</p> <p>○ ○○○ :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설치 비용과 출산축하금인가?</p> <p>○ ○○○ : 출산축하금은 원래 조례가 있었다. 그 조례를 폐기하고 합친 내용이다.</p> <p>○ ○○○ :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아니라면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구립어린이집을 더 만드는 것이 낫다.</p> <p>○ ○○○ : 우리가 의견을 전달할 방법은 없는가? 서식이 불친절하다.</p> <p>○ ○○○ : 일요일에 누리마실 축제 때 여성가족과에서 홍보와 관련하여 등신대 세우는 것을 요청했다. 당시 4인 가족을 보내주었는데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반려했다. 여성가족과의 홍보물 등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p>			

회 의 내 용
<p>○ ○○○ : 지금 이 조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인권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은 어떠한가?</p> <p>○ ○○○ : 이 조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회의에 참석했다. 사실 이 조례의 주 내용은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 하나인데 저출산 극복 이라고 했다. 저출산 이든 저출생 이든 이에 대한 정책기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으로 극복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투여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다들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나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전반적인 기조에도 어긋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 특히 지방에서 출산율이 낮아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구청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철학이 필요하고 그러한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다른 국가의 예를 들면 출산축하금을 현금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출산축하 패키지(Maternity Package), 출산과 관련된 돌봄 박스를 지급하는데 단순한 물품지원이 아닌 정책의지가 들어 있다. 아이를 돌볼 때 필요한 물건, 정책, 프로그램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아이를 돌보는 나는 어떻게 지자체, 국가, 사회서비스를 이용해서 돌봐줄 수 있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아이 옷을 하나 주더라도 분홍색 파랑색이 아닌 다른 색을 넣어 성별감수성을 표현하는 등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철학을 담아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조례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게으른 정책이다. 현재 이러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굳이 성북구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조례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은 낡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철학을 확인하고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모델사업들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정책철학이 나오든 인권이나 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함에 있어 출산축하금의 형태로 나오기는 어렵다. 의미 있는 발언이 될 수 없더라도 지적이 필요하다.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을 여성들의 고학력화 등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문화적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 조례에 나온 정책은 낡았다는 생각이 든다.</p> <p>○ ○○○ :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 못했던 중점사업 중에 저출산 정책이 있었다. 저출산 정책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떠한가?</p>

회 의 내 용

- ○○○ : 저출산 정책에 대해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크지 않다.
- ○○○ : 지금 조례 상태는?
- ○○○ : 의회에 상정된 상태로 지금 이 조례를 바꿀 수는 없다.
- ○○○ : 조례가 의회 통과 된 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향후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라고 조목조목 이야기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정도 이야기로 그칠 것인지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인지.
- ○○○ : 조례에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적용 될 수 있다. 위원회와 관련한 권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북구청의 조례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다. 앞서나간 조례도 많이 있지만 이 조례는 후진 조례에 속한다.
- ○○○ : 이 사업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닌 구색 맞추기식이다.
- ○○○ : 조례에 있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항을 보면 「1.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문가들이 산부인과 의사, 동성애 혐오, 낙태 반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선례들이 많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 ○○○ : 구 안에 인프라가 협소하고 한계가 있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협성이 있다. 광명시의 예를 들면 「1.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산후조리원장, 기업 등 관계자 2.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성평등정책 전문가 4. 기관 실무 책임자 등」으로 되어 있다.
- ○○○ : 조금 낫다. 성북구청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조항은 실제 구성은 편할 수 있다.
- ○○○ : 조례에 여성학, 성평등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 ○○○ : 광명시 조례는 시민사회에서 함께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이야기 할 수 있다. 의견제시 또는 권고를 할 것인가?

회 의 내 용

- ○○○ : 지금 정례회를 못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 각자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례에 대해 인권위에서 심의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의결이 되고 성립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인권위 정례회가 어렵다면 회람 이후에 동의절차를 거쳐서 인권위의 이름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으면 한다. 인권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서울시 인권위의 사례에서도 힘들었다. 더군다나 기초지자체인 성북구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권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성북구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 했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지 정책 권고는 버겁다. 이 회의가 너무 무력하다.
- ○○○ : 2기때부터 계속 무력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월권적 요인이 있다. 직선으로 선출된 성북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반 인권적이 요인이 강하게 있을 경우 반대하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인권위에서 조금 더 인권 친화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영역들이 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조례를 4월에 심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위원회 구성이 반 인권적이라는 정도이지 정책방향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
- ○○○ : 저도 충분히 동의한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절차 안에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간담회의 의견이 정책평가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력하다. 절차 안에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었는데 회의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몫이 없어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조례는 우리가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제정이 된다. 그래도 인권센터에서 보고 권고한 안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 우리가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정례회의가 될 수 없어서 또 보고 안건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 : 회의와는 별개로 인권위에 들어오는 조례에 대해 미리 알려 달라.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놓치는 일이 줄어들 것 같다.
- ○○○ : 변명 같지만,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해 봤지만 아무도 의견을 주지 않았다. 이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회 의 내 용

- ○○○ : 만약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면 정례회에서 권고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 : 그렇지 않다. 인권위 조례에 근거하면 정례회를 통한 권고를 구청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면으로 의견을 준 것은 권고의 효과를 낼 수 없다. 인권센터에서 의견을 만들어 회람을 하더라도 그것은 인권센터의 의견으로 해당부서에 전달되는 것이지 절대 권고의 형태로 전달되지 않는다. 의견서이다. 서면의결은 민간회의에서도 거의 없다.
- ○○○ :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권고안의 위력은? 조례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미리 보고, 「꼭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권위 회의를 꼭 정례회로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 ○○○ : 그렇다. 3기 소위원회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였다. 센터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므로 분야별로 누군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전문분야가 분명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그럴 때 소위원회 위원들과 상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1기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우리처럼 자주 모이지 않는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월1회로 운영되어 상당히 자주 모이는 편이고 그것이 피로도를 높이는 점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 ○○○ : 기록은 되는가?
- ○○○ : 그렇다. 그러나 정례회의 회의록 형태로 남지 않는다.
- ○○○ : 내가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는가?
- ○○○ : 우리가 권고를 하면 누구에게 가는가?
- ○○○ : 구청장에게 간다.
- ○○○ :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회의록 형태라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회서 이야기 안한 것이 아닌데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 ○○○ : 간담회 내용으로 남는다. 지금 녹음도 하고 있고 정리를 할 것이다. 장애인지원 편의지원 조례는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금 늦어진 듯하다.

회 의 내 용

- 보고사항 안내
  1. 현재까지 인권위원회의 조례 규칙 제·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
  2. 간담회 개최결과
  3.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연구용역 실시
  4. 선거영향평가 결과
  5. 주민인권학교 및 직원인권교육 결과
- ○○○ : 회의 이후에 회의록 작성 되는가? 구청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인권위 활동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 ○○○ : 앞으로 의원들에게 회의록에 대해 회람 시키겠다.
- 마침